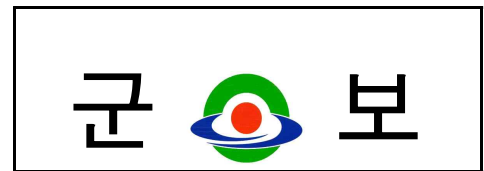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4호 2023. 1. 2.(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군 가축사업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호)

공 고

-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일

예 천 군 수

1. 목 적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및 수질을 보전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사육제한 대상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함.

3. 가축사육 제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확대지정 내용
주거 밀집지역	· 지역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5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1km이내 지역
주거지역	· 지역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도시지역	· 지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300m이내 지역
자연취락지구	· 구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500m이내 지역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
관광·온천지구	· 지구를 포함한 부지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50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 경계선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5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1km이내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km 이내지역
하천구역	·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50m이내 지역
도로구역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지구를 포함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지역
저수지 (저수량 1만톤 이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6호의 저수지(저수량 1만톤 이상)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의료·노유자·종교시설	· 부지경계로부터 700m 이내 지역
지하수 보전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400m 이내 지역
운동시설	· 부지경계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500m 이내 지역
수질오염 총량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되거나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거 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주거지역”이란 「건축법」 상 1호 이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또한, 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는 1회에 한하여, 악취방지·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30%까지 증설할 수 있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내역

번호	읍면명		행정구역 면적(k㎡)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k㎡)			비율 (%)	비고
				계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		
1	예천읍	기정	47.70	47.70	37.92	9.78	7.18	
		변경	-	-	증) 7.25	감) 7.25	-	
		변경후	47.70	47.70	45.17	2.53	7.18	
2	용문면	기정	71.29	67.05	32.22	34.83	10.10	
		변경	-	증) 1.46	증) 19.05	감) 17.59	증) 0.22	
		변경후	71.29	68.51	51.27	17.24	10.32	
3	효자면	기정	67.23	57.94	23.13	34.81	8.72	
		변경	-	증) 1.96	증) 17.90	감) 15.94	증) 0.30	
		변경후	67.23	59.90	41.03	18.87	9.02	
4	은풍면	기정	34.51	33.13	16.37	16.76	4.99	
		변경	-	증) 0.44	증) 9.71	감) 9.27	증) 0.07	
		변경후	34.51	33.57	26.08	7.49	5.05	
5	감천면	기정	65.52	63.76	38.72	25.04	9.60	
		변경	-	증) 0.61	증) 16.79	감) 16.18	증) 0.09	
		변경후	65.52	64.37	55.51	8.86	9.69	
6	보문면	기정	65.33	57.31	34.09	23.22	8.63	
		변경	-	증) 1.26	증) 13.06	감) 11.80	증) 0.19	
		변경후	65.33	58.57	47.15	11.42	8.82	
7	호명면	기정	62.62	59.44	42.64	16.80	8.95	
		변경	-	증) 0.88	증) 10.54	감) 9.66	증) 0.13	
		변경후	62.62	60.32	53.18	7.14	9.08	
8	유천면	기정	38.78	37.57	21.00	16.57	5.66	
		변경	-	증) 0.14	증) 10.92	감) 10.78	증) 0.02	
		변경후	38.78	37.71	31.92	5.79	5.68	
9	용궁면	기정	31.96	31.96	24.90	7.06	4.81	
		변경	-	-	증) 6.18	감) 6.18	-	
		변경후	31.96	31.96	31.08	0.88	4.81	
10	개포면	기정	36.39	35.94	21.53	14.41	5.41	
		변경	-	증) 0.15	증) 9.29	감) 9.14	증) 0.02	
		변경후	36.39	36.09	30.82	5.27	5.43	
11	지보면	기정	79.49	77.09	46.54	30.55	11.61	
		변경	-	증) 0.82	증) 19.13	감) 18.31	증) 0.12	
		변경후	79.49	77.91	65.67	12.24	11.73	
12	풍양면	기정	63.35	62.53	40.84	21.69	9.41	
		변경	-	증) 0.03	증) 14.69	감) 14.66	-	
		변경후	63.35	62.56	55.53	7.03	9.42	
예천군		기정	664.17	631.42	379.90	251.52	95.07	
		변경	-	증) 7.75	증) 154.51	감) 146.76	증) 1.17	
		변경후	664.17	639.17	534.41	104.76	96.24	

※ 행정구역 면적은 카드 상 면적으로 통계연보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5.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예천군 환경관리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기타문의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중전고시의 폐지) 예천군 고시 제2021 - 66호(2021. 9. 1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예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위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조문 및 별지 삭제(제5조 ~ 제5조의6, 제13조, 제16조, 별지 제3호 ~ 제9호, 제17호)

나. 조문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13조의3, 안 제14조의4)

- 제5조 및 제5조의4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 및 ‘산하기관’ 용어 정비
-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범위를 두 배(10만원 → 20만원)로 상향

라. 외부장의 관련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의2)

- 횡수를 초과하는 외부장의 등 승인 신청서 신설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akim092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54-650-60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의4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9항 본문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이”로, “미리”를 “미리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하고, 별

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5만원 ※ 화환·조화 :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5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0만원 (20만원)

※ 비 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신청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아래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요청기관명	①	②	③	④	⑤
요청기관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명칭 (강의대상)					
대 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외부강의등의 날짜 및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활동유형	[] 강의·강연 [] 발표·토론 [] 심사·평가· 자문·의결 [] 기타()	[] 강의·강연 [] 발표·토론 [] 심사·평가· 자문·의결 [] 기타()	[] 강의·강연 [] 발표·토론 [] 심사·평가· 자문·의결 [] 기타()	[] 강의·강연 [] 발표·토론 [] 심사·평가· 자문·의결 [] 기타()	[] 강의·강연 [] 발표·토론 [] 심사·평가· 자문·의결 [] 기타()
외부강의등의 횟수(또는 시간)	월 총 횟수(시간) : 회 (시간)				
월 3회 또는 6 시간 초과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u> <u>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군수가 정하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삭 제></u>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
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
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
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
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있는 법인·단
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
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
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
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
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
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
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공무원 자신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
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군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
우

9. 공무원 자신과 학연, 지연, 종
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
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
우

10. 공무원 자신이 최근 2년 이
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
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

역 제출) ① 군수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삭 제>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
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
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
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
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
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하
나.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
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군
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
관의 소속 기관이나 「공직자윤

<삭 제>

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
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
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
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
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
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 제>

①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
자가 군수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
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
다.

제5조의6(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사
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
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
프, 여행, 사행성 오락, 직무관
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
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
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

<삭 제>

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공용 차량·관사·중기·영농기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2. (생략)

<삭 제>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1.·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
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
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
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
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
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 설>

3. -----

----- 전가(轉嫁)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 단체에 공
무원 -----

--

가. 공무원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의 소
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
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
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
체 중 공무원의 소속기관
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⑧ (생략)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
----- 제4호 각 목의 -----
----- 단

체-----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공무원이 -----

미리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

횃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

-----.
<삭 제>

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
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
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
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
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
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
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
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
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
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